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

2023. 4.

통합고용정책국

I

제도 개요

I

제도 개요

❖ (목적)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

- 소득활동을 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'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

❖ (내용) 출산급여 월 50만원씩 3월분 지급(지급방식은 150만원 일괄 지급)

◆ 동 지침에서 다른 부연설명이 없다면, '출산급여'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를, '(휴가)급여'는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 또는 '출산전후급여'를 뜻함

1 지원 대상 : 소득활동*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(휴가)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**

*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(상한 및 하한)은 두지 않음

** 외국인 제외(단, 결혼이민여성은 포함), 유산·사산 포함(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)

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		요건확인
근로자	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	·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· 고용보험 가입 이력 · 출산일 현재 근로자 · 동거친족 여부 확인
	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(간헐적 소득활동)	· 사업자 확인서 ·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· 고용보험 가입 이력 · 출산일 현재 근로자 ·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· 동거친족 여부 확인
	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(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)	· 사업자 확인서
1인 사업자	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(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)	· 사업자등록(폐업여부,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) · 1인사업자(고용보험 정보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· 세금신고 확인서(국세청 정보,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)
	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(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)	· 사업자등록(폐업여부,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) · 1인사업자(고용보험 정보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·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
⑥유형	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, 프리랜서 등 (간헐적 소득활동)	·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용역계약서, 납품계약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 · 고용보험법 제77조의4,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제외

*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

- ①~③유형의 '일용근로자' 및 ②유형 근로자 :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


- ⑥유형 :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

단,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, ⑥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② 신청 및 접수

신청자	출산여성 본인	- 대리신청 가능
신청기간	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	-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* (예시) '23.1.1. 출산여성: '24.1.1.까지 신청가능
신청장소	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	-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(신청인이 선택 가능) * 온라인 신청(www.ei.go.kr) 또는 우편 신청
제출서류	급여신청서, 소득활동 증빙자료	- (담당자 확인) 주민등록표등본, 고용보험가입이력,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정보 - (신청자 제출) 급여신청서, 유산·사산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

③ 요건 확인

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」 지급 요건(공통)  TIP

○ '출산급여'는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때 지원

☞ 요건 1) 출산사실(유산·사산 포함)

☞ 요건 2)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: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함 (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도 가능)

- ▲ 소득활동 여부는 사업 또는 노무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
ex) 사업자등록증, 근로(도급)계약서, 재직증명,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
- ▲ 소득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함
ex) - 세금신고한 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
- 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,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
- 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, 소득세원천징수한 내역 등

☞ 사례예시) 프리랜서로서 3개월 기간이 명시된 계약(계약서 확인)을 맺고 노무제공의 대가를 일시불로 계좌이체 받은(이체내역 확인) 경우
→ 3개월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인정

□ ①~③ 유형

[출산일 현재 근로자(①~③유형) 관련]

- ☞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확인<②,③ 유형만 해당>
* 재직증명, 근로계약서, 급여입금내역 등 및 과거 타유형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
- ☞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등록(또는 소득활동 확인)하였다면 '출산일 현재 근로자'로 간주
- ☞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
* 배우자, 동거하는 8촌이내 혈족, 동거하는 4촌이내 인척
- ☞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(90일 휴가 부여, 60일 통상임금 지급 등)는 '출산급여'를 지급할지 여부와 무관하며, 범위반 확인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

(①유형)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

- 고용보험DB를 통해 출산일 전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및 180일 요건* 미충족 사실을 확인

*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(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)

유의사항



TIP

- 원칙적으로 출산일 전 30일 이상(일용직은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)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. 다만, 사업장의 착오 등으로 피보험 기간 등이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,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 수정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
- 일용직의 경우, 사업주 확인서는 주된 소속사업장의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
*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업장, 입금내역 확인 가능 사업장,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 등

(②유형)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자

- ◆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(법 제8조 및 영 제2조)
 -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 -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
 -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 - * '가구내 고용활동'과 '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- ◆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(법 제10조 및 영 제3조)
 -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. 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
 - *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
-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해당 여부 및 근로사실을 사업주확인서로 확인
 - 주된 사업장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사업주확인서상 3개월 근로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* 급여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확인
 - * ②유형은 소득활동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사업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사업주 확인서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, 출산일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큼
-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'출산일 현재 근로자'로 간주

유의사항



-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경우,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외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
- * (예시)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후계자증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

(③유형)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

*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지원 제외

-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장의 미성립으로 인해 근로자가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 및 근로 사실을 사업주확인서로 확인

유의사항


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인지 후 조치 : 해당 사업장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
 - 단, 근로자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'출산급여'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, 8개 대표(지)청이 취합하여 일괄 통보
 - ex) '23.1월 지급결정 건이면 '23.7월 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

☞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

(컨설팅 요청) 사업장·근로자의 고용보험 미성립·자격미취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일정기간(6개월) 유예하는 것에 대한 면책을 요청
(컨설팅 결과) 「적극행정」 인정, 향후 감사 시 면책(감사담당관-4828('19.6.21.))

- 이후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 소급납부 등으로 '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'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
 - 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접수 후 지급결정하였다면,
 - ② 기지급한 일반회계 '출산급여'는 근로자로부터 환수 절차 진행
 - * 기지급한 출산급여를 이유로 휴가급여(법정 수급권)를 부지급할 수 없음
 - * 지급할 휴가급여와 환수할 출산급여의 상계처리 불가

□ ④~⑤ 유형

[출산일 현재 1인사업자(④·⑤유형) 관련]

- ☞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·공동사업자.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
 - * 보조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불문하며 보조인력 1인의 경우만 인정
 - *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·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 - *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로 '경영체등록확인서(농업·어업)'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 - *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활동은 불인정
 -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은 불인정
 -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과 일반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영위에 대한 매입·매출 증빙을 별도 징구하여 확인(18개월 중 3개월 이상)
 - ☞ (국세청 정보) 사업자등록정보^① 및 세금신고 사실^② 확인
 - ① 사업자등록증명원,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
 -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(법인)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
 - ☞ (고용보험정보^①, 건강보험정보^②) 피고용인 유무 확인
 -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
 -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개인이면서 1인사업자라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(피고용인이 있다면 직장가입자)
 - 법인이라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(필요시 가입자명부 징구하여 확인)
- ※ 사업자의 세금신고(종류 및 시기) 및 확인 서류

<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>

	간이과세자 (21.7.1~ 연매출 80백만원 미만)	일반과세자	면세사업자
부가세 신고	1~12월분을 1.25.까지 신고	1~6월분을 7.25.까지, 7~12월분을 1.25.까지 신고	부가세신고(x), 전년도분을 2.10.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- 수입금액, 기본경비, 사업장기본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
소득세 신고	전년도분을 5월에 신고	전년도분을 5월에 신고	전년도분을 5월에 신고
	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	

<법인사업자의 세금신고>

	-	부가가치세 과세법인	부가가치세 면세법인
부가세 신고	-	각 분기분을 4, 7, 10, 1월에 신고	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.10.까지 제출
	-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-
법인세 신고	-	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*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까지 신고	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*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까지 신고
	-		표준재무제표증명원

(④ 유형)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~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(1회 이상) 확인이 가능한 자

○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

ex) 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이면서 '22.7.1. 출산여성이고, '20.1~6월분 부가
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된 경우, 요건 충족

(⑤ 유형)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~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

○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 별도 징구

*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 : 매입·매출서류, 계약서류 등
(임금근로자, 특고,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)

□ ⑥ 유형 및 복합유형

(⑥ 유형)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등

○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확인

* 소득활동 증빙 : 재직증명서, 계약서류, 원천징수영수증 등
(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)

○ 예술인·특고 출산전후급여등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4, 제77조의9) 지급대상자
(지급요건 충족자)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

* 예술인·특고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 미충족 예술인·특수고용직은 출산급여 지급 가능

[참고] 예술인·특고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

- ① 출산(유·사산)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, 출산(유·사산)한 날 이전에 예술인·특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② 출산(유·사산)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, 출산(유·사산)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·특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
[참고]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(19개 직종)

- ('21.7월 12개 직종)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기사, 방과후강사,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
 - ('22.1월 2개 직종) 퀵서비스, 대리운전
 - ('22.7월 5개 직종)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골프장 캐디, 화물차주, 통역안내사,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
- '출산급여'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위 19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되지 않음

유의사항



- 출산일 현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,
 -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인의 예술인·특고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필요
 - * 고용보험DB를 통해 3개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
 - ①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·사산)을 한 날 이전에 통산하여 예술인·특고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미만일 것
 - ②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·사산)을 한 날 이전에 18개월 중 예술인·특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것

※ (예시) 출산일이 '23.6.15.인 예술인인 피보험자 A는 '23.1.1.부터 '23.4.25.까지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'23.7.1.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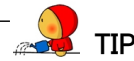
- 출산일 현재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,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미만인지 여부 확인
- 신청인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자이므로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
(복합유형)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*을 하는 경우

* 1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, 근로자이면서 1인사업자 등

- 신청자에게 유리한(또는 신청자가 선택한) 1개 유형을 적용할 수 있고, 필요시 전체유형 적용 가능

유의사항



- 소득활동 증거서류상의 '날짜' 또는 '기간'에 대한 적용 방법
 -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(매입·매출 증거서류, 납품서, (세금)계산서 등)
 -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는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 또한 각각 1개월로 간주(계약서류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보수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
4 지급 결정 및 지급

- 결정 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결정 및 통지
- 지급 : 지급결정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 일괄 지급

유의사항



-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90일 휴무 기간(실제 휴무 여부는 불문)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50만원씩의 급여를 출산여성 본인에게 지급하는 개념임
 - 다만, 정책 대상자의 선호 반영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50만원 일괄 지급
- 출산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좌 압류 등으로 출산급여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
 - 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징구 받을 경우만 가능

※ 유산·사산에 대한 급여 :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

임신기간	(급여산정 기준일수)	급여	지급 방식
~11주	(5일)	30만원	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
12주~15주	(10일)		
16주~21주	(30일)	50만원	
22주~27주	(60일)	100만원	
28주 이상	(90일)	150만원	

* 급여산정 기준일수 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 준용

** 급여액수 : 기준일수의 90일 대비율을 급여 총액(150만원)에 적용하되, 기준일수 10일 이하에 대해서는 30만원 1회 지급으로 동일하게 적용

5 지방관서 예산배정 및 집행

- (배정) 출산급여 예산('23년 15,202백만원)을 반기별로 배정
 - * 지방청은 지청의 집행 추이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청 내 조정
 - *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단체경상보조(330-01)로 별도 통보('23년 350백만원)
- (집행)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활용

1. 집행단위 자금배정 : 지청(고용관리과) → 사업담당(집행단위)

- * 통상 지청단위(고용관리과)에서 관내 각 담당자별로 집행단위 생성 및 자금배정

2. 「내역사업 직권교부결정 및 통지」 : 지청별로 담당자 1인만 수행

- * 가용자금을 등록하는 과정이며,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입력하는 작업이 아님을 유의

보조사업관리 > 교부관리 > 보조사업교부관리 - 내역사업직권교부결정 및 통지

[직권교부결정] 탭 : 목록 중 교부대상 선택 후 결정처리

- * 교부목적, 예산지출구분, 금회 직권교부 결정액 등 입력

[직권교부통보] 탭 : 직권교부결정 등록한 건을 기안, 승인 후 통보

3. 「지출요청」 : 각 담당자가 '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통보'한 건에 대해, 지급할 금액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고용관리과에 지출요청

보조사업관리 > 지출관리 > 지출요청관리 - 지출요청

- * 지출대상, 계좌번호, 금액 등 입력 후 저장, (연계)기안하여 결재를 득하여 지출요청

4. 지출(Dbrain) : 지청 고용관리과 → 출산여성

6 부정이익에 대한 조치

- 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”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*에 해당
 - *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함
- 따라서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
 - 수급자가 반환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

◆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 기준(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1)

-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에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

부정이익 가액	제재부가금 부과율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	500%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	300%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	200%

-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감면 가능
-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미부과 가능

○ 가급적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 등 철저히 확인

II

서 식

서식 1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서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서

※ 반드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: 14일

1. 신청인 정보(출산여성 본인)

①성명: _____ ②주민등록번호: _____
 ③주소 및 연락처 _____ (전화번호 : _____)
 ④출산(유산·사산)일: 20____. ____ . ____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_____

2. 사업주와 동거·친족 여부(출산일 현재 근로자인 경우)

⑥동거여부: []동거 []비동거 ⑦친족여부: 사업주의 []배우자 []8촌이내 혈족 []4촌이내 인척 []해당없음

3. 사업장 정보(출산일 현재 1인사업자인 경우)

⑧-1 사업장명: _____ ⑧-2 사업장주소: _____
 ⑧-3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 _____ ⑧-4 사업자등록번호 _____ ⑧-5 법인등록번호 _____
 ⑧-6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여부 : []가입 []미가입

4. 신청내용

⑨급여의 구분 []출산급여
 []유산·사산급여 (임신기간 : []15주 이내 []16~21주 []22~27주 []28주 이상)
 ⑩급여 지급받을 계좌(출산여성 본인의 실명계좌)
 은행명: _____ 계좌번호: _____ 예금주: _____

5.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소득활동 여부

<근로자>

⑪-1 []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
 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)
 ⑪-2 []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 ⑪-3 []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
<1인사업자(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 및 공동사업자)>

⑪-4 [] 전전년도~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
 ⑪-5 [] 전전년도~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<기타 소득활동하는 자>

⑪-6 []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 ⑫신청기간 연장사유(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)

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급여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 위 내용으로 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급여」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유산·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유산·사산한 경우만 해당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 2.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· ⑪-1, ⑪-2, ⑪-3에 해당 :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· ⑪-2, ⑪-3에 해당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사업주확인서, 별도서식) · ⑪-4, ⑪-5에 해당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⑪-4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· ⑪-5 또는 ⑪-6에 해당 :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등본, 고용보험가입이력, 국세청 신고정보(사업자등록증명,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◎ 신청기간 : 출산일(유산·사산일)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

◎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
1. ③란은 출산여성 본인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.
2. ⑤란은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1명만 기재하고, 출산급여 신청일 현재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, 유산·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111111-1111111로 기재합니다.
3. ⑥란은 사업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, ⑦란은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합니다.
4. ⑧-1부터 ⑧-6란은 출산여성 본인이 1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.
5. ⑩-1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'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
6. ⑩-2란은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*이거나,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**인 경우입니다.
 - * 농·림·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,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,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
(고용보험법 제8조(적용 범위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(적용 범위)의 해당 내용 참조)
 - **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(1주 15시간 미만 포함). 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
(고용보험법 제10조(적용 제외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적용 제외 근로자)의 해당내용 참조)
7. ⑩-3란은 소속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아 출산여성 또한 피보험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.
8. ⑩-4, ⑩-5란은 피고용인이 없는 1인사업자(단독 및 공동)인 경우만 해당합니다.
 - 출산일이 속한 해 또는 직전년도 또는 그 전연도의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⑩-4란에 체크합니다.(부가가치세 신고,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)
 - 세금신고 사실이 없다면 ⑩-5란에 체크하고 소득발생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(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)
9. ⑩-6란은 근로자 및 1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며,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(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)
 - 18개월 기간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의 소득활동을 한 경력이 있더라도,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<증빙자료 예시>

- 소득활동 증빙 : 사업자등록증, 근로(도급)계약서, 재직증명, 경력증명 등
- 소득발생 증빙 : 세금신고 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
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,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
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, 소득세원천징수한 내역 등

* 증빙자료 상의 '날짜' 또는 '기간'의 적용 방법

-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
-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을 각각 1개월로 간주

*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.

10. ⑩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, 본인·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·비속의 질병·부상,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 하며,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